

적극행정부제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법제처



적극 행법 정제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음!!



법제처

CONTENTS

4p

제1장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1. 적극행정이란?
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3. 적극행정 법제란?
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7. 이야기로 보는 적극적인 법령입안·정비·해석



14p

제2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1. 유연한 입법방식
2. 하위법령 활용



34p

제3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사례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사례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강령을!

52p

제4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1.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사례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금지 사례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사례



78p

부록 1

만화로 보는 적극행정 법제

1. 적극행정 법제, 왜 필요한 걸까요?
2.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3. 적극행정 법제로 신제품도 신나게!
4. 중증 청각장애인의 듣기평가 기준점수 개선
5.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86p

부록 2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76p

참고

적극행정을 위한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제1장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CHAPTER 1



오적극 주무관의
적극행정
법제 따라하기

“적극행정은 우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같은 업무를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무관님은 해내실 줄 알았어요.”



“오호 ~~~ 또 한 건 하셨습니다.”



“에이~ 뭘요. 그래도 제안한 법령이 정비되어서 정말 다행이죠. 이럴 때 적극행정을 실천한 보람이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적극행정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이게 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덕분이죠.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동료들의 칭찬에 머쓱해진 나바른 주무관이 손사래를 치며 작은 책자를 흔들며 보인다.



“그 책은 뭐고,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는 또 뭐예요? 선배님, 저도 좀 알려주세요.”

나바른 주무관 옆에 있던 오적극 주무관이 머리를 굽적이며 어깨 너머로 책자를 유심히 쳐다본다.



“아, 오 주무관은 이제 새내기라서 잘 모르겠구나.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줘야겠는걸. 우리 같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해. 그리고 적극행정 법제는 법령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것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저희들이 국민의 삶의 현장 곳곳을 살펴보면서 법령이 없거나 잘못되어 있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부분들을 해결해나간다는 거죠?”

나바른 주무관의 친절한 설명에 오적극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적극행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거든. 이 책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알아야 할 법령을 입안하거나 해석할 때 참고하도록 안내해주는 실용 지침서야. 거기에는 적극행정 법제 사례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아, 그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느꼈을 때 이 책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우와~~ 정말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적극 주무관은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았던 오적극 주무관. 적극행정 법제를 잘 실천하기만 해도 누구보다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활력과 자신감이 생긴다.



“저의 적극행정으로 국민 삶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람이 아주 클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봐, 오 주무관. 지금 어딜 가려고? 점심은 먹고 가야지.”



“아닙니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해야죠. 지금부터 적극행정을 실천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적극 주무관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선배들을 향해 당찬 웃음을 지어보였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의미합니다.

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행정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안



제13조(적극행정)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정·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합니다.

또한,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과 어긋난다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법률의 제정·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됩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데도 법률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복잡화와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나 징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폐단을 고치고 법령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행정 법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누구나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입안·정비하거나 해석할 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용지침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적극행정 법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행정 단계마다 사례 중심으로 적극행정 법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수행하다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법령 의견제시, 정부유권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처의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법제행정에 현안 발생!

현재 법령이나 자치법규만으로
적극행정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2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고쳐야 합니다!
제3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제4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법제처의 지원이 필요한가요?

- 1. 법령입안지원
- 2. 행정법령 의견제시
-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4. 자치법규 의견제시
- 5. 자치법제 119

법제처 법령정비



- 1. 정부유권해석
- 2. 행정법령 의견제시
- 3. 자치법규 의견제시
- 4. 자치법제 119



적극행정 법제가 궁금할 땐!

- 1.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다운로드
- 2. 적극행정 법제 교육신청

※ 부록2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p.86) 참고

7 이야기로 보는 적극적인 법령입안·정비·해석

한 스타트업 기업은 어디서나 편하게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효모 캡슐 하나만 넣으면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온도로 발효시켜 다양한 종류로 나만의 맥주를 만드는 수제맥주 키트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키트는 세계가전박람회에서도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키트를 소매점에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직접 수제맥주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공장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술만이 주류(酒類)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제맥주키트는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만 들어있을 뿐, 알코올이 없으므로 주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매점에서 키트를 이용하여 만든 수제맥주가 주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매점이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고 주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주류제조자가 됩니다. 소매점은 이러한 부담을 안고 키트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수제맥주키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국내 영업을 포기하고 수십억원의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 소관 부처는 법령이 불명확하지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에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고 소매점은 주류제조면허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법령해석

또한, 향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나 기술 발전 등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을 사업화하는 데 「주세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류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입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법령입안·정비

*「주세법」 제3조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주류의 범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이 주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안·정비하였습니다.

적행법 극정제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강령을!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제2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오적극 주무관의
적극행정
법제 따라하기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요건을
규정할 때, 부적격 요건만 정한다면 보다
다양한 기관이 위탁 경쟁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오적극 주무관이 근무하고 있는 과가 근처 사회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봉사팀을 이끄시던 사회복지관 선생님에게 오늘따라 고민이 있어 보였다.



“선생님,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아~ 오 주무관님, 님이 아니라 얼마 전, 인근 시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다녀왔는데 어찌나 프로그램이 다양한지 너무 놀랐어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용자 만족도도 높고요. 저희도 더 좋은 시설과 복지프로그램을 갖춰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더라고요....그래서 저희도 거기처럼 위탁운영을 해볼까 하는데 다양한 업체가 입찰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예요”



“그렇군요! 일을 잘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업체에서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 좋겠어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다양한 업체가 입찰할 수 있게 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실에 복귀한 오적극 주무관은 관련 조례를 살펴보았다.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는 기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기관이 위탁 경쟁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오적극 주무관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서 봤던 유연한 입법방식이 떠올랐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수탁기관의 부적격 요건만 규정해서 부적격자가 아니면 누구나 위탁운영에 응모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걸 ~”

오적극 주무관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대표자인 비영리법인 등을

부적격 요건으로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위탁운영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해당 과에 적극 건의했다. 오적극 주무관의 건의를 들은 담당 주무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여 바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았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날, 담당 주무관은 오적극 주무관을 찾아왔다.



“오 주무관님, 신참내기 공무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오주무관님의 도움이 빛을 발하도록 모두가 이용하고 싶은 사회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하하”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하네요! 이번 위탁운영을 위해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좀 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되는걸요 ~”

오적극 주무관은 뿌듯함을 느끼는 한편, 조금씩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았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하고,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유연한 입법방식과 하위법령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유연한 입법방식

급격한 사회 변화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법령이 탄력적으로 대응되도록 특히 신산업·신기술 관련 분야의 법령을 만들 때에는 유연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연한 입법방식의 예로는 ①포괄적 개념정의, ②분류체계의 유연화, ③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④사후 평가·관리 등이 있습니다.

법률을 입안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비해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적 사항은 하위법령을 제정·개정 하여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법령 활용

법령 체계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이럴 땐 이렇게!

법령을 입안해야 하나요?

꼭 법률이어야 할까요?

🕒 하위법령 활용, 법령 체계도(18p)

법률

1.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합니다.
2.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① 유연한 입법방식
- ② 하위법령 활용

하위법령

1.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합니다.
2.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합니다.
3.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으로 위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① 유연한 입법방식
- ② 하위법령 활용

1 유연한 입법방식



포괄적 개념 정의

현황 및 문제점

만화사업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판, 수출입, 배급, 판매, 디지털만화제작 및 디지털만화전송 사업자만을 만화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만화사업자는 현행 법체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입안 방향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령 해석만으로도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Point _____ 특히 신산업·신기술 또는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분야의 경우에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할 때 새로운 제품·산업·서비스 등이 법령의 제정·개정 없이도 해석에 의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나친 포괄적 정의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체계의 유연화 1

현황 및 문제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가 심한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해서 대상 업종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나타나면 법령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입안 방향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등 기존 업종분류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나 업종은 장관이 원재료 및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규정합니다.



Ⓢ **Point** ——— 분류체계의 유연화는 신산업·신기술 등 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에 적합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존 법체계에 손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해소하고 분류체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체계의 유연화 2

현황 및 문제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례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운동시설, 쓰레기수거·처리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로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입안 방향

문화시설, 공동 육아공간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규정했습니다.



☑ Point _____ 특히 국민들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법령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거나 경직되지 않게 규정하여 분류체계에 보편성과 일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을 위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포괄재위임 금지 원칙”에 따라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합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부령에서는 주요 변경등록 사항만 규정하고 이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Point** ————— 특정한 대상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방식 대신에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이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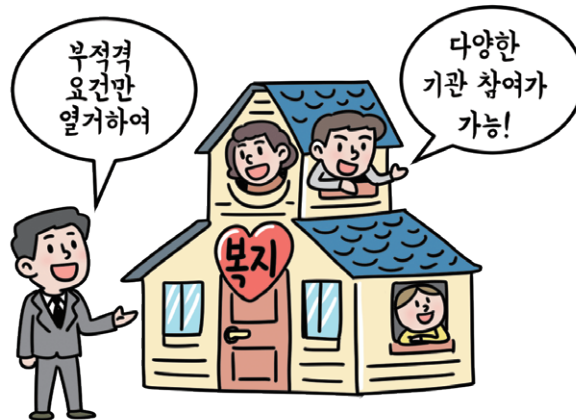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2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수탁기관의 부적격 요건만 규정하여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기관이 위탁 운영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위탁운영이 가능 해졌습니다.



ⓧ **Point** _____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적격 요건만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허용되도록 규정합니다.



사후 평가·관리

현황 및 문제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산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새롭게 농산물 검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많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농산물 검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검정방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장비만을 갖추도록 법령을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 **Point** _____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필요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생명·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하위법령 활용



포상금

개념

포상금은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〇〇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9조(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기업등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Point** _____ 행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〇〇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Point** _____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 없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개념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나 국민·관계기관에 단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〇〇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또는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Point

행정기관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 중인 단순 행정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개념

자문위원회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문을 목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〇〇시 〇〇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인문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〇〇시 〇〇구 인문도시자문위원회를 둔다.



Point

자문위원회는 절차가 임의적이고, 결정이나 판단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자문위원회를 규정할 수 있으며, 사무에 따라서는 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개념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7(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〇〇시 〇〇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수강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수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Point** _____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등가적인 부담으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강제되거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직접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실시

개념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시험 삼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한지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한지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인 한지와 한지사의 활용과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Point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무관한 분야의 시범사업이라면 하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행정규칙 활용

개념

중앙행정기관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규칙(훈령·예규·규정·지침 등)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 내에서 발령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으나,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안 예시

「코로나19 과학기술·ICT 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모니터링 등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과학기술·ICT
지원반”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oint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자체) 자치법규 규칙이나 행정규칙 활용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규칙(훈령·예규·규정·지침 등)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 규칙이나 행정규칙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입안 예시

「〇〇시 〇〇구 정보공개심의회 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〇〇시 〇〇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〇〇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oint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규칙이나 훈령 등에서 규정 할 수 있는 사항은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칙이나 훈령 등을 제정·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제3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다른 영업장과 구분하는 방법을 세분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이 법령이 꼭 개선 돼서 미용실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한가로운 주말을 맞이한 오적극 주무관은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을 찾다가 최근 오픈한 듯 보이는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 좀 다듬어주세요.”



“네~ 예쁘게 손질해 드릴게요.”

최근 옛지 미용실을 오픈한 박사장이 오적극 주무관의 머리를 막 자르려고 할 때쯤, 다급한 듯 미용실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아, 손님이 계셨네.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



“응, 그거 알아봤어? 뭔데?”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알아봤을 때는 운영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또 누구는 미용실 내에 네일숍을 같이 운영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데 사우나 안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잖아. 매점, 헬스클럽, 음식점 등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던데. 미용실은 좀 다른 건가?”



“글쎄,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연락해줄게.”

그 사람은 박사장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미용실을 나섰다.



“제 사촌동생인데요. 재가 네일숍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이 미용실 안에다 네일숍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용시설과 장소를 분리해야 한다면 어쩐디나 뭐 걸리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아, 네~.”



“자~ 다 됐습니다.”

오적극 주무관은 계산을 하고 미용실을 나서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다. 미용실이나 세탁소, 목욕탕, 네일숍과 같이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다른 영업장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미용실의 경우 네일숍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헷갈렸다.

집으로 돌아온 오적극 주무관은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찾아봤다. 역시나 공중위생영업장은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영업장을 분리하는 방법이 불분명해 영업신고 시 행정청의 인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동안 이렇게 기준이 불명확해서 국민들이 불편했겠는데... 월요일에 출근하면 담당 주무관님한테 의견을 제안해야지. 다른 영업장과 구분하는 방법을 세분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이 법령이 꼭 개선돼서 미용실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오적극 주무관은 미용실 박사장님이 답답해하던 얼굴을 떠올리며 꼭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불합리한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신기술 발전이 저해되거나 국민이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일상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합니다.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합니다.



동등한 조건임에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 또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사례

사례 1: 공중위생영업장 시설·설비 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장은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톱인숍(stop in shop)이나 소규모 숙박업 등과 같이 시설 및 설비의 일부분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시설과 설비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불분명하여 영업신고 시 행정청의 인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다른 영업장과의 분리 방법을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분)으로 세분화하는 등 시설 및 설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정비 안
1.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되어야 한다.		1.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야 한다.

Point _____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영업활동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준이나 규제를 개선합니다.



사례 2: 식품제조공장 영업자의 불편 해소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장의 경우 편의를 위해 간이창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창고 설치 시마다 건축물대장에 올리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건축된 대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를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제조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2항 및 별지 제41호의4 서식에서는 식품제조공장 대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설치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담당자에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정비안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Point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 3: 보궐선거로 임명된 동별 대표자 임기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 전원이 동시에 사퇴한 경우라면 후임자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없고, 오히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후 남은 임기가 단기간이라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1년에 2회 이상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선거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정비 안
<p>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p> <p>2. 그 밖의 경우 :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p> <p>② ~ ④ (생략)</p>

📌 **Point** _____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법령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비합니다.



사례 4: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이 철도 등 9종류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그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 1명의 요금을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의 수가 많지 않고,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장애가 심한 경우에만 보호자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비 전		⇒	정비안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제17조 관련)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9. (생략) 10. <신 설>	(생략) <신 설>		1. ~9. (생략) 10. 그 밖의 공공시설	(생략) 100분의 30 이상
비고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Point _____ 행정적 편의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합니다.



사례 5: 근로자의 보험급여청구권 보장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조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협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비 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증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비 전	정비안
제12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1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

Point _____ 실질적인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도입, 그로 인해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 6: 예방접종비 신속 상환

현황 및 문제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결핵 등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발생한 예방접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 예방접종비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급을 미루어 의료기관이 재정 부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가져와 국민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 방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정비안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oint 신속한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사례 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

현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형 푸드트럭은 특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특수자동차는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신고 시에는 차량 면적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형 푸드트럭은 자기가 직접 운전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신고 대상이므로, 차량 면적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영업이 가능해져 푸드트럭 창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를 개정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정비안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Point

국민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사례



사례 1: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제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제도로 개편되어 피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 당시 단순히 용어를 치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일할 능력 있는 정신장애인 등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 방향

업무·자격별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후견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대표 사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 ▶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원으로 채용·배치될 수 없고, 경비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해고 등 사유에 해당함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 피한정후견인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고,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 ▶ **〔한국마사회법, 제11조 마주〕** 피한정후견인은 마사회에 마주 등록을 할 수 없고, 마주가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마주 등록이 취소됨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경매사〕** 피한정후견인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로 임명될 수 없고, 경매사가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경매사에서 면직됨

Point _____ 동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사례 2: 중증 청각장애인의 듣기평가 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각종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듣기평가 기준점수가 청각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듣기평가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과 달리 중증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듣기평가 점수에 한계가 있어 해당 기준이 자격 취득 등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등을 개정하여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격·업종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득점을 평가 하도록 합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전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시험명	자격구분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 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 어	토플(TOEFL, P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토플(TOEFL, 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토익(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텡스 (TEP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72점 이상	201점 이상	367점 이상	404점 이상	600점
	지텔프 (G-TELP, 레벨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플렉스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펠트 (PELT, 메인)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신 설>

정비안

2. (현행과 동일)
3.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시험명	자격구분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 경영사	
영 어	토플(TOEFL, PBT)	264점 이상	371점 이상	412점 이상	
	토플(TOEFL, IBT)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토익(TOEIC)	245점 이상	350점 이상	400점 이상	
	텡스 (TEPS)	'18. 5. 12. 이전 시험	191점 이상	335점 이상	728점 이상
		'18. 5. 12. 이후 시험	121점 이상	221점 이상	243점 이상
	지텔프(G-TELP 레벨2)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플렉스(FLEX)	229점 이상	402점 이상	437점 이상	

비고

-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시험의 기준 점수(이하 "합격 기준 점수"라 한다)는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지텔프 시험은 나머지 부분의 평균 점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토플(TOEFL, IBT) 시험은 듣기부분을 포함한 합계 점수를 말한다.
-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Point _____ 자격 취득 등 측정 기준을 다양화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사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부터 가능하여 육아를 위한 동일한 정책임에도 근로기간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 방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정비안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 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 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Point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사례 4: 각종 학교의 안전성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는 불연내부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용 대상 건축물로 여러 학교 중 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아동들이 머무는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의 경우에도 불연내부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정비 안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학원, 노유자시설, ... 건축물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 노유자 시설, ... 건축물



Point

동등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 안전 보장에 기여합니다.



사례 5: 대안학교 등 졸업자에 대한 동등 학력 인정

현황 및 문제점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일정 분야의 전문계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대안학교 졸업자의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명확하게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정비안
II. 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 나. 요건 (2)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나) 선발기준 및 임용예정계급 ① 선발대상 ㉔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		II. 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 나. 요건 (2)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나) 선발기준 및 임용예정계급 ① 선발대상 ㉔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Point** _____ 동등한 능력 및 학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적극정제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강령을!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제4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CHAPTER 4



오적극 주무관의
적극행정
법제 따라하기 4

**“지자체는 법에 따라 사유지인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할 수 있을 거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던 이 주무관이 궁금한 듯 박 주무관에게 물어본다.



“아, 저기 저 사람들이요? ○○동 대형마트 뒤쪽에 왜 비탈면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지난해에 경사가 급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뭐 문제가 생겼나요?”

박 주무관도 알고 있다는 듯이 응수했다.



“맞아요.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앞 공터까지 아울러 공원으로 바꾸려는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비탈면 토지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문제인가 봐요. 사유지는 소유자가 정비해야 하는데... 그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빨리 정비해달라고 항의 방문을 한 거 같아요.”



“그래요? 사유지는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건가요?”



“흠, 헛갈리네요. 그럼, 우리 오적극 주무관한테 물어볼까요? 요즘에 오적극 주무관한테 헛갈리는 법령을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되는지 안 되는지 내기라도 할까요? 하하하~”

박 주무관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오적극 주무관을 향해 손짓을 한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그때 오적극 주무관이 자리에 앉으면서 물어본다. 이 주무관은 박 주무관과 나눴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두 사람은 궁금하다는 듯이 두 손을 으쓱하는 시늉을 했다.



“아하, 그런 경우요? 그럴 때는 바로 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나요.”

사유지에 해당하는 붕괴위험지역의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헛갈려 하는 이 주무관과 박 주무관을 바라보며 오적극 주무관이 책을 펼쳐 보인다.



“네.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여기까진 알고 계시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자체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사유지까지도 관리·정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급경사지법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네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급경사지의 경우에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법에서 붕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유지 또는 사유 건축물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붕괴위험이 있다면 누가 소유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주무관이 총정리를 하자 박 주무관도 한마디를 거든다.



“아하, 이제 알겠네. 그렇다면 지자체는 법에 따라 사유지인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탕! 탕! 탕! 이렇다는 거죠? 하하하”



“아, 아깝다. 되는지 안 되는지 내기를 했다면 내가 이겼을 텐데...”

박 주무관은 아쉽다는 듯이 무릎을 친다.



“하하하 그런가요? 그럼 대신, 제가 점심을 쏘겠습니다. 자, 점심 먹으러 갈까요?”

이 주무관은 오적극 주무관과 박 주무관을 번갈아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등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법령이 명확한데도 입법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석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 제3자 피해 가능성, 공익상 필요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해석원칙 I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해석원칙 II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적용 금지**

규제 또는 의무 부과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법령의 정의규정이나 사전적 의미, 헌법적 가치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 해석합니다.



허가 등 수익요건을 해석하는 경우, 요건 포함 범위를 문언의 의미보다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사실상 요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석하여 국민이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석원칙 III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1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사례



사례 1: 가스 재공급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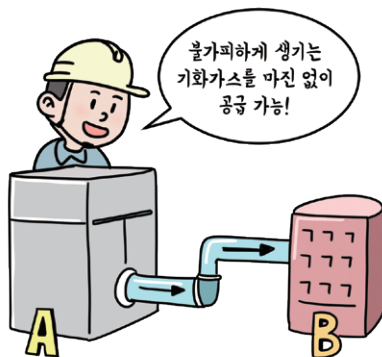
A 회사에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저온을 유지하는 냉동물류창고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를 통해 냉동물류창고의 냉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기화가스가 발생합니다. A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화가스를 냉동물류창고와 동일한 부지에 있는 자회사 B에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공사가 가스 수요자에게만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자가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가 하려는 행위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석 방향

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자회사에 판매 마진 없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해석



Point

입법 공백이 있더라도, 법령의 취지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행위를 허용합니다.



사례 2: 유치원 증여

현황 및 문제점

사립유치원을 직접 소유·경영하는 A씨는 사립유치원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마침 A씨가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관련 규정입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중 하나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A씨와 같이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해석 방향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 및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6-0371

📌 **Point** _____ 입법 공백이 있더라도, 법령의 취지 및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행위를 허용합니다.



사례 3: 용적률 산정

현황 및 문제점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반대로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하지 않은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모든 토지가 같은 용적률을 가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도시개발구역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별로 각각 용적률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 방향

실제 개발 밀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용도별 부분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 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9-0411

$$\text{가중 평균 방식} = \frac{(\text{용적률1} \times \text{면적1}) + (\text{용적률2} \times \text{면적2}) + (\text{용적률3} \times \text{면적3})}{\text{전체면적}(\text{면적1} + \text{면적2} + \text{면적3})}$$

☑ **Point** _____ 절차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례 4: 세대 분리 기준

현황 및 문제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구성원, 즉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세대에 속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세대원 중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해당 세대원 중 일부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새롭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또는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인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인 A씨와 며느리인 B씨는 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A씨만이 대표자로서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남편(이자 A씨의 아들인) C씨와 함께 실거주지를 옮겼으며 동시에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여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

문제는, 법령에서는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며느리인 B씨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석 방향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9-0465

Point _____ 법령의 취지 및 제도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사례 5: 국유토지 공장 설립

현황 및 문제점

A회사는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매입했지만, 아직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 회사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 외의 자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입주 기업체나 지원기관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받은 입주 기업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령에서는 “임대받은” 경우에만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A회사와 같은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장 설립을 허용할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해석 방향

국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임대계약 종료 후에 원칙적으로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임차인은 공장을 건설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는 매수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A회사와 같이 국유토지를 분할매입한 경우 역시 공장 설립을 허용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8-0236



Point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사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례 6: 홈페이지 공고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데, 시·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해당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지자체에서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7-0513



Point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의 입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사례 7: 재정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A구는 구 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체를 광역시·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해석 방향

해당 사업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광역시·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기초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A구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A구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8-0011

📌 **Point** _____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의 입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사례 8: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문제점

A지자체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역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장소 이외에 시간까지 고려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해석 방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권한에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범위 등 결정권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 및 장소를 특정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9-0216



Point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장소를 특정하는 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사례 9: 정비사업 주체

현황 및 문제점

A시는 지역 내에 있는 급경사지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A시에는 국가 또는 A시 소유의 토지 뿐 아니라 붕괴위험이 높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소유·사용관계가 복잡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시는 A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공유지 외에 이러한 사유지까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사유지까지도 관리·정비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7-0381



Point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행정 업무 수행 권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사례 10: 이용료 면제규정

현황 및 문제점

A군은 주민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의 100분의 50만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군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의 필요, 재정상황 등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이용료 감면율을 더 높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9-0346

☑ **Point** ———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목적 및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 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사례 11: 공동계약 허용

현황 및 문제점

A공기업에서는 B국의 국영기업과 공동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국가·지자체 및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에 외국 기업과의 공동 계약 발주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사무규칙」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지자체 등과의 공동으로 발주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타국의 기업과 공동으로 계약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A공기업이 B국의 국영기업과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해석 방향

사회환경 변화 및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외국의 국영 기업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9-0642, 0692



Point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합니다.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금지 사례



사례 1: 건설업 등록 대상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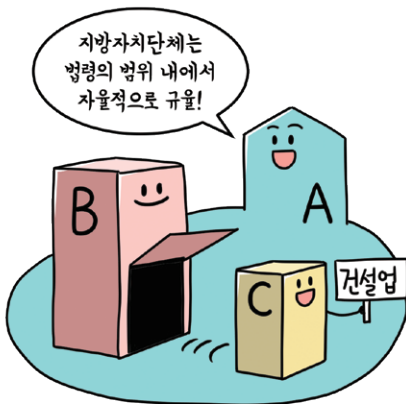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A지방공사는 B지자체에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최근 A지방공사는 건설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자회사 C를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이 경우 C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문언상 지방공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업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처 해석례 17-0672



Point _____

금지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부담금 납부의무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창업자”)가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획을 행정청에서 승인하면,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 경우 그 농지 전용허가까지 의제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됩니다.

한편,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가 거부된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A는 최근 제조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계획 승인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고, 사전 납부가 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한 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환급받도록 하지 않고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9-0336

☑ Point 불필요한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를 축소 적용하고, 나아가 납부 후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사례 3: 가축사육 제한 권한 여부

현황 및 문제점

A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규정하고자 입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A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A군 어디에서도 가축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군과 같이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법령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고시와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더 나아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사람”에 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9-0208



Point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법령에서 부여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사례



사례 1: 상속세 공제 대상

현황 및 문제점

B씨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해당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였는데, 집이 마음에 들어 5년 전 큰 마음을 먹고 해당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B씨의 아들인 A씨는 해당 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B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타깝게도 B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B씨는 일찍 사별하여 배우자가 없던 터라, B씨의 재산은 모두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주택이 동거인에게 상속된 경우 사망자와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하면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B씨가 실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 방향

공제 여부는 문언에 따라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만 검토하면 되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세청 해석

📌 **Point** _____ 문언에 명시된 요건을 해석하면서 사실상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례 2: 변경허가 범위

현황 및 문제점

A지자체에서는 카지노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업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재지 변경을 금지하는 것까지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석 방향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재지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법령에서 허락하지 않은 권한에 해당하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8-0199



Point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었더라도, 법령의 범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사례 3: 서류 열람권한

현황 및 문제점

A씨는 100 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A씨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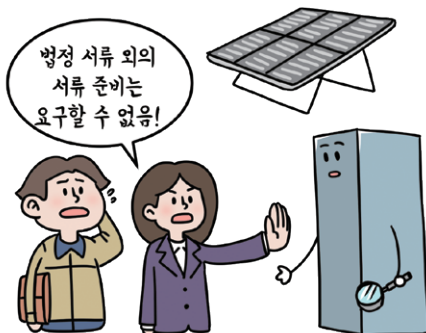
그런데 태양광 발전허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서 A씨가 제출한 서류 외의 서류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열람을 요구받은 서류는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나, 허가 과정에서 재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의 요구대로 해당 서류를 열람시켜 주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200 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로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에게는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9-0355



Point

법정 서류 외의 서류를 준비하도록 사실상 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석합니다.



사례 4: 근무경력 인정 대상

현황 및 문제점

A씨는 청소년지도사를 준비 중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성가족부고시)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A씨는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적은 없으나,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파견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파견사원 기간을 포함하면 청소년지도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경력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청소년단체에 직접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간 준비해왔던 청소년지도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A씨는 파견근로 경력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석 방향

문언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아 수행한 경우를 경력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 경력 역시 청소년단체 근로 경력에 포함됩니다.

※ 법제처 해석례 18-0159



Point

자격요건이나 인력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문언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자격·근로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합니다.



사례 5: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도로

현황 및 문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시에서는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도로는 A시에 무상 귀속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급 부처에서 도로가 “종래의 공공시설”이라면 공식적으로 공용개시절차를 밟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알려 왔습니다.

A시에 있는 종전의 도로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공용개시절차를 밟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A시에 무상귀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해석 방향

법령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공용 개시 여부)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9-0740



Point

특별한 사정 없이 입법 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령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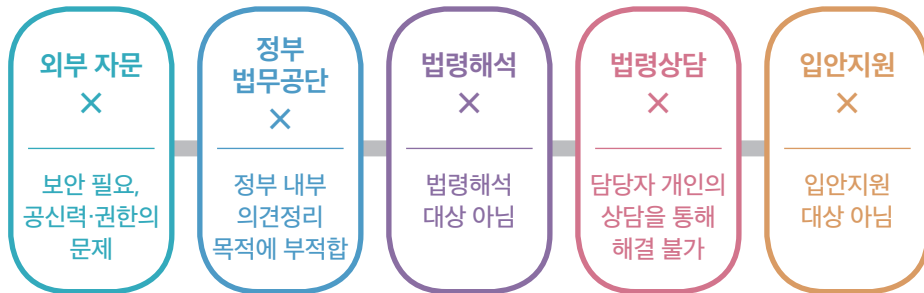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 안내



도입 배경

사회문제의 융합화, 복잡한 법률 관계 등으로 부처의 정책 도입·추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법제처의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유권해석제도, 법령입안제도 등 기존의 법제처 지원 제도를 통해서도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신속한 법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제도 개요

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행정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의견을 구하면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처의 정책결정, 적극행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자문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부처는 제시된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며, 민사·상사·형사 법령,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법무부 소관 법령 및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

행정법령 의견제시 사례 1



질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보상금이나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한 다른 법률에 따른 수혜 등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선택적 포기를 한 후 보훈급여금을 다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기간 동안의 보훈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해결 방향

보훈급여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과 보훈급여금의 포기 및 포기 취소의 규정 필요 범위에 관한 입법적 검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제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바람직한 입안 사례를 제공하는 등 종합법제해결책을 담아 4일 내 회신하였습니다.

행정법령 의견제시 사례 2



질의 내용

개정 「공직자윤리법」(2020. 6. 4. 시행 예정) 부칙 제2조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이 법 시행(2020. 6. 4.)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2020. 6. 4. 이후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자인지, 2020. 6. 4. 이후 재산을 등록하는 자인지?

해결 방향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안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주 내에 답변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 유권해석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의 문언, 같은 법률의 다른 적용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일 내 회신하였습니다.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부록 1



만화로 보는 적극행정 법제



적극행정 법제, 왜 필요한 걸까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적극행정 법제로 신제품도 신나게!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한 벤처기업 A사!

하지만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난관이 있었으니...!

알코올이 1도 없는데 무슨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요? 안 돼요!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1도 이상이 되어야 술이라고요?

Feat. 기재부

할?

국세청

우리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니! 해외로 회사를 옮겨야 하나...

난데 없이 주류제조면허는 왜 우리더러 따라는 건데요?

헉... 우리가 양조장이예요?

소매점

자, 이때 적극행정제도 구원 등판합니다!

A사의 문제는 물론

소매점의 주류제조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

땡!

A사는 주류제조면허 허가!

소매점은 주류제조면허 면제!

땡!

적극적인 법령해석

기재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까지 주세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와~ 적극행정 법제 만세~!

주류의 정의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
+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와 유사한 것

적극적인 법령입안 정비

중증 청각장애인의 듣기평가 기준점수 개선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적행법 극정제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강령을!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부록 2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



• 가이드라인 2.0 전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내
-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 적극행정 법제 교육

- 적극행정 법제 및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법제 전파
- 법제교육과(교육 신청)
044-200-6775
- 법제정책총괄과(교육 내용)
044-200-6569



1 제도화 교육

• 행정법령 의견제시

- 적극행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의견 제시
-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539



• 정부유권해석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 소관 부처와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해석 제시
-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4 해석 지원

※ 사전컨설팅 시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중앙 부처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바(적극행정 운영지침),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부처가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행정법령 의견제시를 활용할 수 있음



법령입안지원

-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 지원
-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행정법령 의견제시

- 적극행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의견 제시
-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539

② 입안 지원



③ 정비 지원

법령정비

- 법제처 자체 발굴 및 부처 요청
정비 과제에 대해 법제처가 주관
하여 불합리한 법령 정비 실시
- 법령정비과
044-200-6575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행정법령 의견제시, 정부유권해석, 법령입안지원,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도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제도화 교육

가이드라인 2.0 전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내
-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적극행정 법제 교육

- 적극행정 법제 및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법제 전파
- 법제교육과(교육 신청) 044-200-6775
- 법제교육과(교육 내용) 044-200-6569



4 해석 지원

정부유권해석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소관 부처와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해석 제시
-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자치법규 의견제시

- 자치법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의견제시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2 입안 지원

자치법규 의견제시

-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의견제시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4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조례 입안단계에서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 지원
- 자치법규입안지원팀 044-200-6761



자치법제 119

- 입법기술적이거나 비교적 간단한 자치입법 사안에 대한 신속한 상담 제도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46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 상위법령 위배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 지원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48



3 정비 지원

적극행법

극정제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